

#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

### 1. 소득세법 개정 내용

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(소득법 §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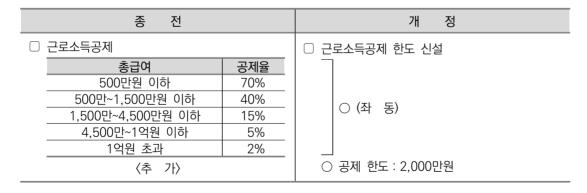
〈개정이유〉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

종 전	개 정
□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・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○ 육아휴직 급여・수당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○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〈추 가〉	<ul><li>□ 비과세 대상 확대</li><li>□ (좌 동)</li><li>○ 배우자 출산휴가급여</li></ul>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(소득법 §47)

〈개정이유〉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

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(소득법 §59의2)

### 〈개정이유〉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

개 정
□ 대상 조정
○ (좌 동) - 〈삭 제〉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·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(소득령 §38)

#### 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

종 전	개 정
□ 근로소득의 범위	□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
○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·임차자금을 저리·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	○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· 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

5

#### ISA계좌 만기시 개인·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(소득법 §59의3 ③,④, 소득령 §40의2 ②, §118의2 ③)

〈개정이유〉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

종 전	개 정
□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	□ ISA(개인종합자산관리)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
○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:연 1,800만원	○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: 연 1,800만원 +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*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
○ 세액공제 한도 : 연금저축 300~400만원 (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)	○ 세액공제 한도 확대 : 연금저축 300~400만원 (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) +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
〈신 설〉	○ 추가 납입 방법: -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하거나, -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

####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(소득령 §17)

〈개정이유〉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

종 전	개 정
□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	□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
○ 비과세 기준 금액 - (월정액 급여*) 210만원 이하 * 봉급・급료・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장 근로・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- (총급여액) 직전 과세기간 2,500만원 이하	- (좌 동) - 2,500만원 → 3,000만원 이하
○ 비과세 한도 : 연간 240만원	○ (좌 동)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7)

#### <sup>]</sup>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(소득령 §79)

〈개정이유〉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

종 전	개 정
○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○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(①→②)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	□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○ (좌 동)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
② 이월기부금 산입	*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(소득령 §106)

〈개정이유〉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<ul> <li>○ 종합소득 기본공제(1인당 150만원)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</li> <li>○ 직계존속(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)</li> <li>○ 직계비속・입양자(20세 이하인 경우)</li> <li>○ 형제자매(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)</li> <li>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li> <li>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위탁아동</li> </ul>	□ 직계존속・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○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□ (좌 동) □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(20세 이하인경우)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9

#### 」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(소득규칙 §58)

〈개정이유〉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

종 전	개 정
<ul> <li>□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*</li> <li>*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</li> </ul>	□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
○ 안경・콘택트렌즈 구입비용, 보청기, 장애인 보장구, 의료기기 구입・임차비용 〈추 가〉	○ 산후조리원 비용

〈적용시기〉 2020.3.13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(10) 폐업·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(소득규칙 \$93)

〈개정이유〉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<ul> <li>□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</li> <li>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,</li> <li>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〈추 가〉</li> </ul>	□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-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・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

〈적용시기〉 2020.3.13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(소득령 §194① 별표2)

〈개정이유〉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

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* *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○ 근로소득세표  □ 근로소득세표  □ 근로소득공제 한도(2천만원) 반영  □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 월급여 기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6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 45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 임리어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7 등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 30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20배만원 임리어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28백만원 임리어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28백만원 임리어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28백만원 임리어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30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30백만원 임리어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	종 전	개 정
월급여 기본		□ 근로소득 공제 한도(2천만원) 반영
구분         계액           28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        28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          ~         6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 45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          의리에 1천만원의 경우의 세액+         30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          20배만원 왕국에 1천만원의 경우의 세액+	○ 근로소득세표	○_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
~ 6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 45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~ 6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 30백만원 금액 × 98% × 40%) ~ 30배만원 워크어 1천만원이 경우이 베앤크	AIIOII	MICH
워그어 1처마위이 겨오이 베애+ 30배마의 워그어 1처마위이 겨오이 베애+	~ 6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	~ 6,585,600원 + (2,800만원 초과
45백만원   13,249,600원 + (4,500만원   조과   소과금액 × 98% × 42%)		
45백만원 출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 초과 금액 × 42%)		<sup>45멕인전</sup>  13,385,600원 + (4,500만원 초과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

(12)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(소득법 \$81의7, 법인법 \$75의4①

〈개정이유〉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

종 전	개 정
□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○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%	<ul><li>□ 가산세율 인상</li><li>○ 2% → 5%</li></ul>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### 13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(소득령 §12제9호, 소득칙 §6의5)

〈개정이유〉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

종 전	개 정
□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	□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
○ 항공수당	○ 항공수당(유지비행훈련수당 <sup>*</sup> 포함)  * 「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」 별표2의 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
○ 함정근무수당	○ 함정근무수당(유지항해훈련수당 <sup>*</sup> 포함) * 「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」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
<ul><li>낙하산강하위험수당,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, 잠수부위험수당, 고전압위험수당, 폭발물위 험 수당 등</li></ul>	○ (좌 동)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 1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(소득령 §225의3)

〈개정이유〉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

종 전	개 정
□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	□ 제출기관 추가
○ (제출의무)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	○ (좌 동)
<ul><li>(대상)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, 수산업 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, 군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 등</li></ul>	○ 우정사업본부 추가
○ (기한)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	○ (좌 동)

〈적용시기〉이 영 시행(2020.2.11.)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



1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(법인법 §57, 소득법 §57)

#### 〈개정이유〉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
종 전	개 정
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	□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
<ul><li>한도<sup>*</sup>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</li><li>* 산출세액 × <u>국외원천소득</u> 과세표준</li></ul>	○ (좌 동)
-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: 5년 〈추 가〉	- 5년 → 10년 -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

〈적용시기〉 20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16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(소득법 §165, §174의3)

#### 〈개정이유〉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	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
<ul> <li>○ (대상) 소득공제・세액공제<sup>*</sup>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* 의료비, 보험료, 연금계좌 납입액 등 ※ (절차)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→ 자료 집중기관 → 국세청장 〈추 가〉</li> </ul>	○ (좌 동) - 보험회사 등 보험·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
□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	〈삭 제〉
○ (대상) 보험회사 등 보험·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	

〈적용시기〉 2021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### 2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6의2)

〈개정이유〉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

종 전	개 정
□ 벤처기업 임·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	□ 대상범위·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○ (대상)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(시가-행사가액)	<ul><li>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(시가-행사가액)</li></ul>
○ (한도) 연간 2천만원	○ 연간 2천만원 → 3천만원
○ (적용기한) 2020.12.31. 	○ (적용기한) 2021.12.31.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

## 2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(조특법 §16)

〈개정이유〉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

종 전	개 정
<ul><li>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</li></ul>	□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
<ul> <li>○ (시기) ① 또는 ② 중 선택</li> <li>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</li> <li>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</li> </ul>	○ ①을 원칙으로 하되,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* 출자・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출자・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(조특법 §18의3)

### 〈개정이유〉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

종 전	개 정			
〈신 설〉	□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			
	○ (대상) 이공계 박사학위(국내 대학학위 포함)를 소지한 내국인 <sup>*</sup> 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 <sup>**</sup>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* 세부요건 ① 자연계・이공계・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・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**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, 국책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			
	○ (감면율・기간) 5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			
	○ (취업요건)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			
	①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*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			
	②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·대학부설연구기관 등			
	○ (적용기한) 2022.12.31. ※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			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



### │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(조특법 §29의6)

#### 〈개정이유〉 중소・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

종 전	개 정		
<ul><li>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</li></ul>	□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		
<ul><li>(요건)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</li></ul>	<ul><li>○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</li></ul>		
○ (납입기간 요건) 5년 이상 〈추 가〉	-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 (2~3년)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<sup>*</sup>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*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(18.12월)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연계 가입이 허용		
○ (감면대상자)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· 중견기업 <sup>*</sup> 근로자 *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			
<ul> <li>(감면대상 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</li> <li>*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</li> </ul>	○ (좌 동)		
○ (감면율) 중소기업 근로자 50%, 중견기업 근로자 30%			
○ (적용기한) 2021.12.31.			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

# (5)

###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(조특법 §30)

#### 〈개정이유〉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	□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
<ul> <li>○ (대상) 청년・60세이상자・장애인・경력단절 여성</li> <li>- (경력단절여성 요건)</li> <li>•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</li> <li>• 임신・출산・육아 사유로 퇴직</li> <li>• 퇴직 후 3~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</li> <li>○ (감면율) 70% (청년은 90%)</li> </ul>	<ul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결혼 • 임신 • 출산 • 육아 •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</li> <li>• 퇴직 후 3~15년 이내 동종 업종*에 재취직 *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</li> </ul>
*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	
○ (감면기간) 3년 (청년은 5년)	○ (좌 동)
○ (적용기한) 2021.12.31.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 6

####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(조특령 §27)

#### 〈개정이유〉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종 전	개 정
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	□ 대상업종 확대
○ (대상) 청년·60세이상자·장애인·경력단절 여성	
<ul><li>○ (감면율) 70%(청년은 90%)</li><li>*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</li></ul>	○ (좌 동)
○ (감면기간) 3년 (청년은 5년)	
○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음식점업 등	<ul><li>대상 서비스업종 확대*</li><li>*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, 스포츠 서비스업,</li><li>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</li></ul>
○ (적용기한) 2021.12.31.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○ (좌 동)

〈적용시기〉 2020.1.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# 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(조특령 §121의2)

〈개정이유〉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 대상 구체화

종	전	개 정
〈신	설〉	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・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*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- 박물관・미술관: 7,500만원 - 신문구독료: (2021년 시행 예정)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 8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(조특법 §86의4)

〈개정이유〉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·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

종 전					개 정	
	연금계좌세액공	당제 한도 및 공제율		50세 이상 공	제한도 확대	
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공제율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(퇴직연금 포함)	공제율
	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)	400만원	15%	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)	600만원	15%
	1억원 이하 (1.2억원)	(700만원)	12%	1억원 이하 (1.2억원)	(900만원)	12%
	1억원 초과 (1.2억원)	300만원 (700만원)	1270	1억원 초과 (1.2억원)	300만원 (700만원)	1270
		〈신 설〉		초과자 ② 금융소	대상) 특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득 종합과세 대상자 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	1.2억원
	〈신 설〉			○ (적용기한)	2022.12.31.	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

# 9

####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(조특법 §126의2)

#### 〈개정이유〉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

종 전		개 정		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	□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		
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	사용금액	○ (좌 동)		
○ (공제율) 결제 수단・대상에 따	라 15~40%	○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·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% 적용		
<ul> <li>신용카드: 15%</li> <li>현금영수증・직불형카드・ 카드 등: 30%</li> <li>도서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 : 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</li> <li>전통시장・대중교통 사용분:</li> </ul>	· 사용분 ·자만 적용)	- (좌 동) - 도서·공연·신문·박물관·미술관사용분: 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 - (좌 동)		
○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로 200~3	300만원	○ (좌 동)		
○ (추가 공제한도) 아래 항목별로 한도 추가	각 100만원	○ 도서・신문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:100만원		
항목	한도 추가	항 목 한도 추가		
전통시장	100만원	전통시장 100만원		
대중교통	100만원	대중교통 100만원		
_ 도서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 │ 100만원		도서 · 공연 · 신문 · 100만원 박물관 · 미술관		
○ (적용기한) 2019.12.31.		○ (적용기한) 2022.12.31.		

〈적용시기〉(신문구독료) 2021.1.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

#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·미술관 범위 명확화 (조특법 §126의2)

〈개정이유〉 박물관・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

종 전	개 정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□ 박물관·미술관 범위 명확화
○ (공제율) 결제 수단・대상에 따라 15~40% - 도서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 사용분 : 30%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 ○ (공제대상 금액) 도서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 사용분 - 도서・공연: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,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 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*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- 박물관・미술관: 박물관・미술관법에 따른	○ (좌 동)  - 박물관·미술관: 박물관·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·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
박물관·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※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	지정 <sup>*</sup> 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* 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 포함
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	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# 11 '20.3~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(조특법 §126의2)

### 〈개정이유〉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

종 전(20.3.23.)			개	정		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	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				
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	사용금액	0	(좌 동)			
○ (공제율) 3~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· 대상에 따라 30~80%			4~7월 사용분 80%로 상향	신용카.	드등 소득	득공제율을
구분	공제율		구분	3월	4~7월	8~12월
신용카드	30%		신용카드	30%		15%
현금영수증・체크카드 등	60%		현금영수증 등	60%	80%	30%
전통시장・대중교통	80%		전통시장 등	80%		40%
* '20년 1,2,7~12월 사용분은 15~40% 적용 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로 200~300만원  (추가 공제한도)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						
항목한도 추가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100만원도서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100만원○ (적용기한) '22.12.31.			○ (좌 동)			

〈적용시기〉 2020.5.19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## [12]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(조특법 §18)

〈개정이유〉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지원

종 전	개 정
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	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(소재·부품· 장비 기술자)
<ul><li>○ (대상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*</li><li>*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,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</li></ul>	○ (좌 동)
○ (감면율)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- 5년간 소득세 50% 〈추 가〉	○ (감면율)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- (일반) 5년간 소득세 50% - (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 <sup>*</sup> )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 *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
○ (적용기한) '21.12.31.	○ (좌 동) - 다만,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는 '22.12.31.

〈적용시기〉 2020.1.1.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

### <sup>│</sup>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(조특법 §126의2)

#### 〈개정이유〉 소비활성화 유도

쫑	신			개	싱	

- 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  -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
  - (공제율) 결제 수단·대상에 따라 차등

구분	~'20. 2월	3월	4~7월	'20. 8월~
신용카드	15%	30%		15%
현금영수증 · 체크카드 등	30%	60%	80%	30%
도서 • 공연 • 미술관 등*	30%	60%		30%
전통시장・대중교통	40%	80%		40%

- \*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
-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로 200~300만 원

총급여 기준	한도
- 7천만 원 이하	300만 원
7천만 원~1.2억 원	250만 원
 1.2억 원 초과	200만 원

- \*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, 전통시장,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
- (적용기한) '22.12.31.

□ '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

○ (좌 동)

○ '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

ᄎ그어 기즈	한도			
총급여 기준	'20년	'21·'22년		
7천만 원 이하	330만 원	300만 원		
7천만 원~1.2억 원	280만 원	250만 원		
1.2억 원 초과	230만 원	200만 원		

- \* 도서·공연·미술관 등, 전통시장,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
- (좌 동)

### 14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(조특법 §95의2, §122의3)

### 〈개정이유〉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

종 전	개 정
□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	□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
○ (대상자)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)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, 성실신고확인대상자	○ (좌 동)
<ul> <li>○ (공제율)</li> <li>- 총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000만 원 이하자): 월세액의 12%</li> <li>-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이하자): 월세액의 10%</li> </ul>	- 4,000만 원 → 4,500만 원 - (좌 동)
○ (월세액 한도) 750만 원	○ (좌 동)

〈적용시기〉 2021.1.1.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